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시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91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13.
3. 회부연월일 : 2024.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 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보건복지부의 ‘국립트라우마센터’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심리지원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고,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가 해당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함)의 구성원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 ② (생략)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u>구성하며</u> ,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 ----- ----- <u>구성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을 포함하여야 하고</u> -----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과 ②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²⁾임.

-
- 1) 「재해구호법」 제8조의2(중앙 및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도에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 ④ 시·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시·도심리지원단은 시·도 관계부처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2.>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심리지원단과 국립트라우마센터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원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임직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립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재난 심리지원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심리지원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실익에 관하여는 현행법령의 규정과 재난 피해 심리지원에 관한 현행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은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은 중앙심리지원단을 단장 1명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³⁾하고 있음.

-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조정 및 제도 개선·정비
 2. 관계부처 공통의 심리회복지원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중앙심리지원단 개요>

○ (구성) 26명 (단장은 민간위원)

- (당연직)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12명

*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여가부, 고용부, 경찰청, 산림청, 소방청, 해경청, 인혁처

- (위촉직) 심리회복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민간 전문가 14명

- (임 기) 2년(제3기, '24.7.~'26.7.)으로 연임 가능

○ (회의) 정기 : 연 2회(상·하반기), 수시 : 재난 발생 시

※ ('20년) 8.14. ('21년) 6.30. ('22년) 3.28., 11.3., 11.19., 12.15. ('23년) 5.9., 7.21., 12.15. ('24년) 4.22., 6.17., 6.24., 12.17., 12.29

자료: 행정안전부

국립트라우마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으로 현행법령의 심리회복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심리지원단의 위촉직 위원 중 1인으로 국립트라우마센터장이 포함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심리회복지원의 기초 조사
6.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7.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이주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③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
 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이주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 ④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되어 있음.

이와 같이 이미 국립트라우마센터장이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른 유관기관과 달리 국립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만 별도로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원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행정안전부도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심리지원단에 보건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정신건강정책관, 당연직)과 국가트라우마센터장(위촉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둘째, 재난 피해 심리지원에 관한 현행 체계를 살펴보면,

① 중앙심리지원단이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② 재난 발생 초기의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이재민, 일시대피자⁴⁾ 및 재난경험자⁵⁾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활동을 통해 그들이 재난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국가트라우마센터⁶⁾와 정신건강

4)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일시대피자”란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한다.

5) **재난경험자**: 구호·봉사·복구 활동 참여자, 재난목격자, 재난 피해 정도에 관계없이 당사자 신청 또는 재난심리 유관기관에서 심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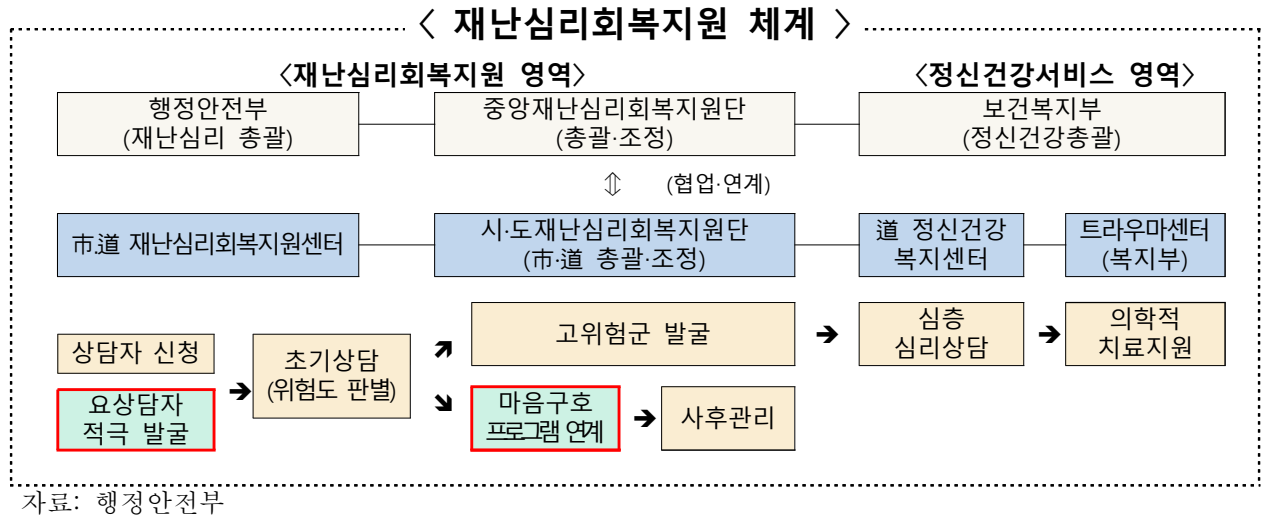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복지센터의 연계·관리를 통해 심층 심리상담, 의학적 치료지원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체계상 중앙심리지원단과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중점적인 역할이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양자 간에 업무가 중복되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④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